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16. 이기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1.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3.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기현의원)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재유)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인 “공문서등”의 범위에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현행	개정안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u>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u>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과 공공기관등의 <u>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u> 게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누리집 등에</u>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4조¹⁾는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1)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조제5호의 “공문서등”에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 글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문서등”의 정의 규정에 공공기관등의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²⁾는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누리집의 게시물”은 “전자문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현행 법 제3조제5호에서도 “공문서등”의 정의에 “전자문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리집의 게시물” 또한 “공문서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문서등의 정의에 누리집의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누리집의 게시물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또는 비문 등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개념에 누리집의 게시물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의 종류에 누리집의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누리집의 게시물”은 본질적으로 “전자문서”의 하위 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전자문서와 누리집의 게시물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누리집의 게시물이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임오경)

“누리집의 게시물”을 “전자문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리집의 게시물이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규정되도록 수정의결.

6. 찬반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누리집의 게시물”은 “전자문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바, “누리집의 게시물”의 개념을 “전자문서”에 포함하여 규정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호 중 “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과 공공기관등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물을”을 “전자문서{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제3조(정의)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5. ----- ----- ----- ----- ----- ----- ----- ----- ----- ----- -----문서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5. ----- ----- ----- ----- ----- ----- ----- ----- ----- ----- -----전자문서 {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누리집

<u>한다. 이하 같다)</u> <u>를 말한다.</u>	<u>특수매체기록과</u> <u>공공기관등의 누</u> <u>리집(인터넷 홈</u> <u>페이지를 말한다.</u> <u>이하 같다)의 게</u> <u>시물을 포함한다.</u> <u>이하 같다]를 말</u> <u>한다.</u>	<u>(인터넷 홈페이지</u> <u>지를 말한다. 이</u> <u>하 같다)의 게시</u> <u>물을 포함한다}</u> <u>· 현수막 · 안내</u> <u>판 등의 특수매</u> <u>체기록을-----</u> <u>-----.</u>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를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를 “누리집 등에”로 한다.

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문 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누리

<u>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u> <u>등에</u>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u>집 등에</u> -----. ③ (현행과 같음)
---	----------------------------------